

제 7 장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 제1절 재정규모 분석
- 제2절 부문별 투자계획
- 제3절 자원조달 방안

제 7 장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제1절 재정규모 분석

1. 재정현황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에 따른 자원 확보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6년 결산한 2015년 세입은 3,644,307 백만원이며, 세출은 3,078,708 백만원으로 조사됨.

〈표 7-1〉 세입 및 세출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세출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5년 (2016년 결산)	3,644,307	2,597,854	835,577	210,877	3,078,708	2,209,383	658,448	210,877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재정공시 자료

2. 재정규모 전망

가. 재정규모 전망

- 향후 대중교통 투자계획을 위한 장래 재정규모 전망은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한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검토함.
-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7년~2021년의 총 재정규모는 20,450,516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2%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7-2〉 재정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897,393	4,005,155	4,110,855	4,177,952	4,259,161	20,450,516	100.0%	2.2%
일반회계	2,720,335	2,773,172	2,826,893	2,872,539	2,928,909	14,121,848	69.1%	1.9%
특별회계	706,067	743,020	764,856	769,650	776,413	3,760,005	18.4%	2.4%
기금	470,991	488,963	519,106	535,763	553,839	2,568,663	12.6%	4.1%

자료 : 울산광역시,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나. 울산시 분야별 투자 계획

1)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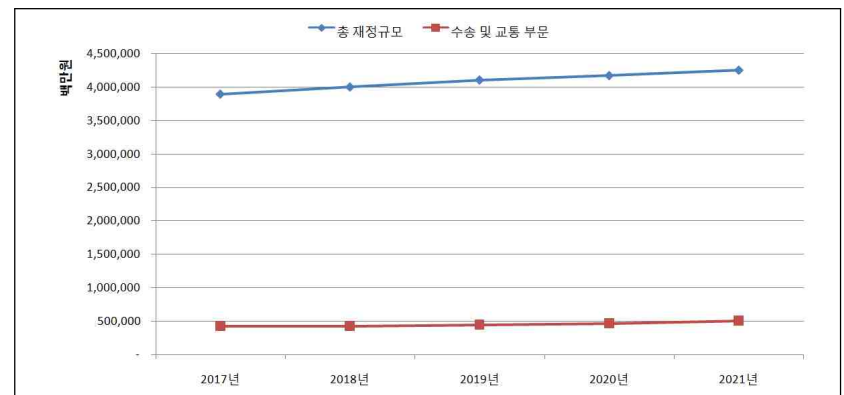
-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총 사업예산을 20,450,516백만원으로 전망하였으며, 그중 수송 및 교통 분야 투자계획은 2,267,561백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11.1%를 계획함.

〈표 7-3〉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3,897,393	4,005,155	4,110,855	4,177,952	4,259,161	20,450,516	100.0%	2.2%
수송 및 교통	424,923	424,603	445,615	464,453	507,967	2,267,561	11.1%	4.6%
일반공공행정	753,241	755,104	764,694	772,766	790,063	3,835,868	18.8%	1.2%
공공질서및안전	305,177	329,819	347,684	364,757	376,907	1,724,344	8.4%	5.4%
교육	306,886	290,498	296,208	296,678	307,628	1,497,898	7.3%	0.1%
문화 및 관광	154,871	172,554	165,555	161,969	160,434	815,383	4.0%	0.9%
환경보호	305,687	302,852	330,939	322,940	319,600	1,582,018	7.7%	1.1%
사회복지	795,163	807,052	827,962	850,701	865,316	4,146,193	20.3%	2.1%
보건	39,113	39,493	39,889	39,859	39,948	198,303	1.0%	0.5%
농림해양수산	87,218	93,423	76,015	81,493	88,343	426,492	2.1%	0.3%
산업중소기업	172,976	190,484	220,600	222,389	185,047	991,496	4.8%	1.7%
국토및지역개발	228,924	270,195	261,524	260,014	272,799	1,293,454	6.3%	4.5%
예비비	54,312	54,312	54,312	54,312	54,312	271,560	1.3%	0.0%
기타	268,902	274,766	279,859	285,621	290,798	1,399,946	6.8%	2.0%

자료 : 울산광역시,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림 7-1〉 재정규모 추이

2) 수송 및 교통 부문 재정 분배계획

- 수송 및 교통부문 총 투자계획은 2,267,561백만원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의 투자비는 740,899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7-4〉 수송 및 교통 부문 재정 분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비중	
수송 및 교통	424,923	424,603	445,615	464,453	507,967	2,267,561	11.1%	4.6%
도로	281,852	27,592	294,687	314,809	364,050	1,525,991	7.5%	6.6%
해운·항만	134	134	134	134	134	671	0.0%	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2,936	153,877	150,793	149,510	143,783	740,899	3.6%	0.1%

자료 : 울산광역시,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울산광역시」 계획에 따라 수송 및 교통 부문 중 대중교통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 구축('06~'21) 23,019백만원,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17~'21) 61,835백만원 및 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17~'21)에 81,477백만원으로 총 166,331백만원이 계획 되어 있어 총 예산의 0.8%, 수송 및 교통부문 예산의 7.3%를 차지함.
- 향후 투자사업 중 기 투자 사업비는 대중교통 물류부문 계획사업에 투자되도록 계획된 재원으로 본 계획에 의한 신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재원의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부문별 투자계획

1. 대중교통계획에 따른 총 투자계획

- 본 계획에서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조성'을 위해 각 세부항목에 대한 시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함.
-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3,092.0억 원으로 계획됨.

〈표 7-5〉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공영차고지 확충	5,617	5,000	-	-	-	10,617.0
	공영차고지 위탁 관리 운영비 ^{주1)}	279.8	284.4	284.4	284.4	284.4	1,417.4
	철도망 구축	400	-	-	-	-	400.0
	버스우선처리시스템 도입	-	-	-	1,500	42,500	44,000.0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246.5	246.5	246.5	246.5	232.0	1,218.0
	환승시설 정비	3,300	-	-	-	-	3,300.0
	버스정류장 인접 교차로 개선	1,376	-	-	-	-	1,376.0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시행	25	25	25	25	25	125.0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제작 ^{주1)}	38	38	38	38	38	190.0
	버스정류소 정차선(Blue-line)설치	26	26	26	26	26	130.0
LED 행선지 안내전광판 개선	-	430	144	144	144	862.0	
공공와이파이 구축	-	98	232	350	386	1,066.0	
소 계	11,308.3	6,147.9	995.9	2,613.9	43,635.4	64,701.4	
대중교통 이용 효율화	BIT 개선(신설/교체)	600	800	500	500	500	2,900.0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	80	120	120	120	120	560.0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 운영 ^{주1)}	36,322	45,026	45,026	45,026	45,026	216,426.0
	소 계	37,002.0	45,946.0	45,646.0	45,646.0	45,646.0	219,886.0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운수종사자 승무교육	9.5	10	10	10	10	49.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50	50	50	50	50	250.0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주1)}	35	35	35	35	35	175.0
	시내버스 승무원 제복 구입비 지원 ^{주1)}	48.2	48.2	48.2	48.2	48.2	241.0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주1)}	21.4	22.8	22.8	22.8	22.8	112.6

〈 표 계속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서비스 우수승무원 씨티투어 실시 ^{주1)}	3	-	-	-	-	3.0
	서비스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교육 연수 ^{주1)}	40	40	40	40	40	200.0
	시민 만족도 조사 ^{주1)}	17.7	20.2	20.2	20.2	20.2	98.5
	첨단안전장치 장치	-	296	144	-	-	440.0
	비상탈출용 망치 설치	-	-	0.5	-	-	0.5
	소화기 설치	-	-	1.5	-	-	1.5
	서비스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 ^{주1)}	20	20	20	20	20	100.0
	제7차 대중교통 국제정책 포럼 ^{주1)}	22	-	-	-	-	22.0
소 계	266.8	542.2	392.2	246.2	246.2	1,693.6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벽지개선명령노선 탑승객 조사 ^{주1)}	30.8	-	-	-	-	30.8
	벽지 개선명령 구간 및 마실택시 확대	1,043.0	1,128.6	1,128.6	1,128.6	1,128.6	5,557.4
	저상버스 확충	645	922	645	1,751	1,751	5,714.0
	특별교통수단 개선(노후 특장차 교체)	360	300	60	300	180	1,200.0
소 계	2,078.8	2,350.6	1,833.6	3,179.6	3,059.6	12,502.2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조성	CNG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1,460	1,460	1,460	1,460	1,460	7,300.0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	633	623	623	623	623	3,125.0
	소 계	2,093.0	2,083.0	2,083.0	2,083.0	2,083.0	10,425.0
합 계	52,748.9	57,069.7	50,950.7	53,768.7	94,670.2	309,208.2	

주 1) 전략과제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울산광역시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액

제3절 자원조달 방안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건의(교통시설특별회계법 관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에 의거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비율은 1천분의 100이하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비율 현행 10%이하 수준에서 상향 조정 및 대중교통 관련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지원 이외에 대중교통 운영적자에 따른 보조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함.

〈표 7-6〉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자원배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용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용자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용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용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 1천분의 430이상 490이하 2. 철도계정 : 1천분의 300이상 360이하 3. 공항계정 : 1천분의 70이하 4. 항만계정 : 1천분의 70이상 130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 1천분의 100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울산광역시 자체 자원 확보방안

가. 대중교통 관련 재정투입 비율 확대방안

- 현재 「2017~2021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한 대중교통 관련 사업비 책정 금액은 총 166,331백만 원으로 총 예산의 0.8%, 수송 및 교통부문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송 및 교통부문의 7% 수준인 예산을 점진적으로 1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광역교통세 신설 검토

- 광역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세 도입 검토
 - 프랑스 STIF(일드-프랑스권 교통조합)에서 직접 세금수입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교통세(Versement Transport)의 경우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들이 인건비 총 금액의 0.5~2.5%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업에 의해 도시 내 통근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중교통 투자비를 기업이 부담하게 함.
- 광역교통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기업에 대해 지방목적세를 부과하여 광역대중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변 부산시 및 경상남도 등 주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징수시기 및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경기상황과 연동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

다. 도심혼잡통행료 시행 검토

- 도심 내 통행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해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도심 혼잡통행료를 징수, 대중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현재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에서 Hi-pass 및 RFID 등을 활용하여 징수하고, 전기차량 등 친환경차량 및 HOV(High-Occupancy Vehicle : 다인승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할인 및 경감

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원 조달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승용차 이용자의 억제 및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함.

2)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및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교통망체계 등의 수익자 및 사회적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업자나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임.
- 대규모 시설물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역세권 개발, 부동산증가세, 개발부담제 등 조세의 형태 등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며,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의 소통을 위한 교통부문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

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원 조달방안

- 지방채는 지속적인 이익사업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발행하지만, 대중교통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래 경제유발 효과로 재원을 확보 가능한 사업이나 투자의 효과가 향후 다음 세대에 이익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자원 조달방안

- 교통 관련 투자 사업은 공공성과 외부효과의 이익을 내제하고 있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계획되어 투자되고 있으나, 이러한 투자에 비해 수요를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분을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 유치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